

137<sup>th</sup> MAR 2020

#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55주년

 **Cover Story**

05 ... 스마트(SMART) 관세행정예 신고인과 화주의 불편도 배려

 **Voice From the Field**

08 ... 타이공(代工)이 면세점과 국내 유통 시장에 미친 영향력과 규제  
현황 분석

 **Inside Vietnam**

11 ... EU 의회, EU-베트남 FTA 비준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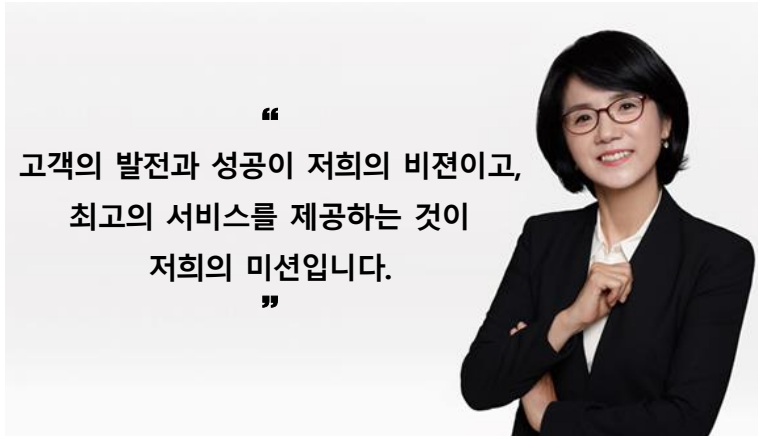
13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 관련 심판사례**

16 ... 위탁가공계약에 따른 무상물품의 가격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면제  
사유의 존부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땡땡땡! 전차 소리가 들립니다. 남대문을 출발하여 용산으로 향하는 전차입니다. 한 묶음 서류를 든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부역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오래 전 서울세관은 서울역사의 서북쪽 끝인 서부역 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보세화물 창고 몇 동과 100 명 가량의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분주한 곳 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휴전한지 채 10 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치적 · 경제적으로 황폐한 나라이지만 여기저기에서 숨결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청년 장흥진은 이 살아나는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관을 떠나며 주저없이 수출입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세관으로부터 500 여미터 떨어진 남대문 인근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고객사의 서류를 들고 하루에도 수 차례 오고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첫번째 관세사<sup>1</sup> 자격시험은 1964년 말에 치뤄졌습니다. 기존의 당연직 자격자들을 포함하여도 84번째의 국가공인 관세사가 되었습니다.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이 시작되어 해마다 40%가 넘는 수출신장을 이루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수출액 1억달러 돌파를 기념하며 수출의 날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은 1965년 3월에 서울통관사라는 상호로 서울세관에 정식 등록하였습니다.

이번 달 Cover Story 는 '스마트(SMART) 관세행정 에 신고인과 화주의 불편도 배려'입니다. Voice From the Field 는 '다이공(代工)이 면세점과 국내 유통 시장에 미친 영향력과 규제 현황 분석'이며, 베트남 현지에서 알려드리는 Inside Vietnam 은 'EU 의회, EU-베트남 FTA 비준'입니다. 또한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며, 관세 관련 심판사례는 '위탁가공계약에 따른 무상물품의 가격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다져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 걸음마를 하다가 걷고 또 뛰어가며 성장해 나가듯이 기업도 성장해 나갑니다. 서울통관사가 신한관세법인으로 성장하는 길에는 서부역에서부터 남대문까지 뛰어다닌 술한 길들이 기반이 되어줍니다. 두 발로, 자전거로 또 자동차로 오고 가며 다져진 땀과 수고의 길들은 '구로공단'으로 강남으로, 인천으로 부산으로, 또다시 세계로 펼쳐 나갑니다.

세관창고에 도착한 물품들을 신속정확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세관화물취급인의 역할은 현대의 관세사에게도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러한 통관을 바탕으로 관세사는 관세심사·조사 업무의 자문, FTA·AEO 제도 관련 컨설팅, 무역 및 외환관련 자문 등 수출입 통관과 연계된 모든 분야에서 고객사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로 펼쳐나가는 고객사들을 위한 Globalization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수십년을 함께 한 고객사가 있고 또 수십년을 함께 나아갈 고객사가 있습니다.

수십년을 함께 한 직원이 있고 또 수십년을 함께 나아갈 직원이 있습니다.

고객의 발전과 성공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위해 열정을 가진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55년간 지켜왔으며 다시 100년을 향해 또다시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직원들과 고객들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헤쳐나왔듯이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도 고객의 앞에서 또 뒤에서 저희는 꾸준히 나아갈 것입니다. 서울통관사 창업시의 기본정신인

첫째, 정직하게 살자

둘째, 어떠한 시간약속도 꼭 지키자

셋째,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자

를 이어서 Passion, Innovation, Teamwork, Integrity 의 모토를 가슴에 새기고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서 전통의 기반 위에서 새롭게 도전해갈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다져온 우리의 정성은 미래를 향하여 오늘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부족한 부분은 가르쳐 주시고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up>1</sup> 당시명은 세관화물취급인 customs house broker



*Cover Story*

# 스마트(SMART) 관세행정 신고인과 화주의 불편도 배려

## 제 4차 산업혁명

클릭클릭! 손가락의 몇 번 움직임만으로도 나의 소비패턴, 나와 성별, 연령, 취향이 유사한 사용자를 분석하여, 연관상품을 추천해주는 온라인쇼핑몰, 내가 관심 있어하는 분야와 읽은 뉴스를 분석하여 추천하는 포털 사이트, 버튼작동으로 집안의 가전기기를 작동하는 기술 등 제4차 산업혁명<sup>2</sup>은 우리의 현재생활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지능과 정보 기반의 제 4차 산업혁명은 관세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업무의 편의성 및 분석의 정교함이 높아져 매일매일 새로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차 미 정** 관세사  
mjcha@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잠정/확정신고
- 요건확인
- 품목분류

## 신기술과 결합하여 관세행정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시스템 운영

### 1. 수입신고 품명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고도입으로 부정신고 적발 강화

관세청은 2020년 업무계획의 하나로, '신기술 기반의 행정지능화로 스마트한 관세행정'을 발표하였으며, 그 중 신고정확도 향상을 통해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고자, 신고가이드 교육 및 내·외부 시스템개선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월 주요 수입품목 (HSK 700개)에 대한 「수입신고 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수입신고 하도록 계도기간(1~3월)을 거쳐 20년 4월부터는 시스템을 적용 예정이다. 현재 HSK 700개의 집중관리품목은 2023년 이후 약 12,000개로 확대 실시 될 예정으로, 저위험 수입물품은 신속 통관하고, 위험물품은 집중관리하여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 2. 물류지체 및 신고인과 화주의 불편 예상

HS CODE 및 품명 규격에 자세한 기재는 정확성 제고면에서, 유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수출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상의 물품 정보를 기초로 수입신고의 특성상 수출자가 기재하지 않은 정보까지 파악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품목별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의 기재는 해외 수출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이나, 글로벌 기업인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을 위하여, 시스템을 변경하여 요청을 하기에는 쉽지 않는 일이다.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는 전세계의 중소 수출자를 설득하고 요청하는 일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국시장이 수출자의 매우 큰 고객사, 시장인 경우에는 시스템을 변경하여서도, 물품을 판매하려고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제공하겠지만, 수입자가 약자인 경우, 한국만을 위해 기존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할 경우, 수입화물은 사전에 현품을 확인하든지, 물품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사정하여야 한다.

만약 수입신고 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요구하는 정보가 미흡한 경우,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오류사항을 통보하여, 수입통관 처리지연으로 인한 통관리드타임 증가, 오류사항 빈도 증가에 따른 검사 비율 상향으로 물류비용의 증가, 실무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예상할 수 있다.

## 화주 및 신고인의 준비기간에 대한 기다림도 필요

관세행정의 선진화 및 적용기술로 세관에서는 편리해질 수 있지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화주, 신고인은 업무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모든 기업이 준비하고, 체계를 갖추는 과정은 시간이 소요되며,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은 짧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세행정이 선진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화주, 신고인이 함께 노력해야 가능하며, 준비된 자만의 일방적인 앞으로 나아감이 아닌, 상대방을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다. 관세행정-화주-신고인이 함께 준비하고, 성공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20년 4월 전면시행이 아닌, 유예기간을 두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sup>2</sup> 제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第4次産業革命]: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Voice From the Field*

# 따이공(代工)이 면세점과 국내 유통 시장에 미친 영향력과 규제 현황 분석

## 관세청의 규제 강화

중국 관광객이 면세점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익숙한 사실이나, 이들의 대량구매는 생각보다 더 크고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덕분에 면세점과 화장품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 받은 물품이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관세청이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규제강화와 업계의 반대 사이에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강 가 램** 관세사  
grkang@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FTA 컨설팅
- 기업심사
- 품목분류

**따이공의 영향력 - 면세점 매출의 견인차**

중국인 대량 구매대행 고객을 업계에선 일명 '따이공(代工)'이라 일컫는다. 이들은 면세점에서 물품을 대량구매하여 판매하는 보따리상으로 면세점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형식이다. 2019년 기준 국내면세점 매출 약 19조원 중 73%가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것이며 이 중 80% 이상이 따이공이 구매한 것이다. 특히 면세점 국산화장품 매출의 85%는 따이공으로부터 나온다.

**관세청 입장 - 현장인도의 부작용**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와 국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외국인은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을 현장인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일부 따이공 및 유학생이 현장인도 받은 면세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여 불법유통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①면세물품 표시제(화장품 브랜드 19년 7월 시행) ②현장인도 제한 및 수출인도장 활성화(19년 11월 시범운영) 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 현장인도 제한 및 수출인도장 활성화: 면세품 대량구매자의 현장인도를 금지하고 수출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인도받고 수출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과 신설된 수출인도장 운영지침을 참고.

**업계의 입장 - 규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및 매출하락**

업계에선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규제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① 우범여행자의 현장인도 제한 ② 화장품 '면세용' 표시제 기시행 ③구매한도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와중에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수출인도장을 강제하는 것은 따이공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면세점 및 관련 업계의 매출 감소 및 경제 침체 등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장인도 금액의 단계적 확대와 따이공이 수출인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대안이 마련 된 후 규제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향후 전망

실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출인도장 이용객은 전무하였으며 관련 업계의 의견 제출로 현장인도 제한 및 수출인도장 규제는 시행이 연기된 상태이다. 앞친데 뒤편 격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면세점 매출에 큰 타격이 가해져 업계에선 임대료 인하, 판매(구매)수량 제한 완화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면세점 및 관련 업계가 중국 관광객에 기대지 않도록 내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정부 또한 글로벌화된 시장변화와 매출구조를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side Vietnam*

# EU 의회, EU-베트남 FTA 비준

## EU-베트남 FTA

2020년 2월 12일, EU 의회는 EU-베트남 FTA(이하 "EV FTA")를 비준했다. 8년 간의 협상 끝에 2019년 6월 3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EV FTA는 찬성 401표, 반대 192표, 기권 40표로 통과되었으며, 이는 EU가 베트남을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V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금년도 4~5월로 예정되어 있는 베트남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쩌뚜언안(Tran Tuan Anh)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본 협정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7월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성 현** 관세사  
sh.park@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FTA 컨설팅
- FTA 교육
- 관세환급
- 품목분류

**EV FTA의 전망**

EV FTA에 따라, 베트남은 협정 발효 직후 약 65%의 EU 상품에 관세를 면제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EU는 협정 발효 직후 약 71%의 베트남 상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나머지는 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EV FTA에 따라 베트남에서 EU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물품의 수입 관세는 단기간에 철폐될 예정이며, 이는 베트남이 서명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2025년까지 베트남의 GDP는 4.5%, EU로의 수출은 4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EU 위원회는 2035년까지 EU의 GDP가 295억 달러,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 철폐는 스마트폰, 전자 제품, 섬유, 신발 및 농산품을 포함한 베트남의 주요 수출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의 대 EU 수출 증가 시, 자본과 고용 증가의 모든 측면에서 EV FTA는 이들 산업의 확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내용은 베트남 현지 배포 자료를 근거로 신한관세법인이 구성, 재정리한 것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 베트남 소식 관련 상세 문의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베트남관세법인**

박은실 법인장: +84-(0)24-7300-8630 [VN], +82-(0)70-5222-7280(KR)  
espark@shcs.kr, scv@shcs.kr

**신한관세법인**

최대규 이 사: +82-(0)2-3448-1181 [KR] / dkchoi@shcs.kr  
박성현 관세사: +82-(0)2-3448-1181 [KR] / sh.park@shcs.kr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0399호, 2020. 2. 11.]

## 개정 이유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체납자의 감치(監置) 및 출국금지·정지 제도, 입국장 인도장 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체납자의 감치(監置)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출국금지·정지의 해제 요청 사유 및 입국장 인도장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홍정화** 관세사  
jhhong@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 품목분류

**주요 내용**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물품 추가(제29조제3항제7호 신설)**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에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를 추가함.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자료 사용범위 제한(제31조제8항 신설)**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신청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범위를 제한함.

**반덤핑관세 부과요청 절차 개선(제5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주무부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거래에 관한 검토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덤핑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제141조의7 신설)**

관세청장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 감치기간 등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관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절차를 규정함.

**관세 체납 관련 출국금지 등 요청 대상자 및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사유 규정 (제141조의8 및 제141조의9 신설)**

관세 체납과 관련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대상자를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등으로서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등으로 정함.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 대상 규정(제187조의4 신설)**

컨테이너화물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함.

### **입국장 인도장 관련 규정 마련(제213조의2 신설)**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입국장 인도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입국경로에서 물품을 적절하게 관리·인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입국장 인도장의 승인요건 등을 규정함.

###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제264조의2 및 제264조의3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청장의 서면실태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1회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 **통고처분 시 기준금액 상향(제270조의2제1항)**

경미한 관세사범에 대해 처분하는 통고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 비율을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 관세 관련 심판사례

# 위탁가공계약에 따른 무상물품의 가격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 쟁점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 사실 관계

- (1) 청구법인은 OO 소재 위탁자와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쟁점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해외위탁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 (2) 2018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청구법인의 신고 가격이 부적절하여 2018년 5월 청구법인은 쟁점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 및 가산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최 다 희** 관세사  
dh.choi@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AEO 컨설팅
- 기업심사
- 관세환급

(3) 2018년 10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정책에 관여할 수 없어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인보이스 가격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에서 처분청에 수정 신고한 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판결 요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무상 수입되었더라도 청구법인이 정확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과오가 있으므로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무상 수입 물품은 거래당사자간에 별도로 가격을 정하지 않는 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그 과세가격을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위탁가공계약상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으로서 이를 확인하기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가격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해외위탁자로부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가격자료 제출을 거부당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위탁가공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망실/분실한 경우 해외위탁자로부터 이를 유상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그 기준가격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과 일치하는 등 위의 근거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였을 때, 해외위탁자가 제공하는 인보이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관세법 및 동 법의 시행령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유무는 금번 판례와 같이 특수한 거래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 및 거래상대방에게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성실한 노력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려는 자는 당해 가산세 부과 처분이 ① 과세근거의 명확성, ②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 ③ 과세관청의 언동, ④ 기타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설득 논리는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